

학생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창원레포츠파크·경상남도교육청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서

창원레포츠파크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협약기관” 이라고 한다)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 레포츠 체험 활성화 및 방송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레포츠 체험 및 방송체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공영자전거 누비지를 활용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육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2.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및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을 활용한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방송재능 기부를 통한 학생 대상 미디어 체험 및 진로 교육 지원
4.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 협력사업

제3조(역할 및 책임) 협약기관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 역할 및 책임을 다한다.

제4조(협의조정)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실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본 협약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의협력)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협약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6조(성과 관리 및 개선) 협약기관은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상·하반기) 점검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보완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석 등)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기타) 협약기관 대표는 본 협약서 2부에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1월 6일



교육감 박종훈

서명 



이사장 예상원

서명 